

법정에서는 문물

고문

김수환 추기경, 윤공화 대주교, 나필모 주교, 유현석 변호사, 이돈명 변호사

거도위원

▶ **행정** - 과노현, 구영서, 김동주, 김명선, 김민배, 김상덕, 김용수, 김영길, 나간배, 문계연, 박봉자, 박순희, 박영일, 서석규, 성영, 임종희, 오창래, 윤승녀, 윤영길, 윤경현, 이기희, 이기영, 이국형, 이규경, 이명준, 이재규, 이재희, 이정복, 이종기, 이필택, 정성일, 권승기, 권용래, 권학자, 최병모, 추규영, 허동삼, 홍성훈, 황보용석, 황서현, 김귀남, 노영민
▶ **수도자** - 손인숙, 안문기, 장루시아, 최이려나, 나 프랑치스카, 공병선 머리아, 박영숙 머리아, 최주영 심내아, 김일파 머리아, 정순희 계마, 예수의 가리려나 명자 작문자매, 박순애 여나디시아, 고순경 프랑치스카, 김준길 가리려나, 박 머리아, 고도영, 이영자, 양 배안네, 프즈머리
▶ **성직자** - 강희성, 김병삼, 김승훈, 김영관, 김영욱, 김영호, 김영국, 김택양, 남국현, 류강하, 리수현, 문정현, 박윤경, 박창일, 배은하, 송기연, 송홍철, 신성규, 신승근, 신현봉, 안종서, 오경환, 원유승, 이현로, 장용주, 정규원, 정현달, 조경현, 조호동, 최기식, 최승오, 한세웅, 호인수, 황상근, 임문철, 문창규, 고병수, 현오안, 남승택, 김기종, 김순호, 이계창, 김기, 윤종관, 김현준, 배종호, 문영기, 최원서, 이영주, 조창래

상임대표

김영진 신부, 문국주(청정연 상임대표), 이원영 수녀

공동대표

곽동성, 과준서, 김계홍, 김원호, 신대운, 어이기, 김중운, 김진화, 김항섭, 김형태, 김홍진, 문규현, 문형두, 박병훈, 박벽오, 양영수, 이성규, 이연우, 이준형, 정홍규, 조성계, 조욱종, 최민서, 이진선, 최승근, 황정우

참가단체

광주대교구노동사목, 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대교구환경사제모임, 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부산교구공부방연합회, 부산교구노동상담소, 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서울대교구한마음한물운동본부, 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사)우리신학연구소, 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인천교구가톨릭청년연대, 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전국환경사제모임, 제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백두레신앙인학교, 세계상용어는천주교여성공동체, 천주교정의구현상주연합, 강기수가족후원회, 천주교청년공동체, 전국가톨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가톨릭청년단체협의회, 천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사)푸른평화, 전국가톨릭농민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전국본부,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공동경행위원장

곽한영(정의평화위원회), 노진민(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이영우(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그리고 이길과 평화롭게 사모하는 모든 이가 함께 합니다.

도움주실 곳

국민은행 031-21-0788-334 곽한영

NSL1.77
인권정보자료실
NSL1.77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작은 책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17 (100-150)
(T)02-747-2448 (F)02-747-2447
e-mail : kukbobub@chollian.net

순서

머리말	1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문화 선언	2	국가보안법 사문화 범종교인 선언
만화로		3		국가보안법! 통일! 그리고 신앙인
푸른	12	박시백의 국보법이야기①~④
국가안법		16		따미의 국보법이야기
나는 이렇게		22		여성
생		23		노동자
과	24	정치인
한		26		변호사
다		27		네티즌
최근사예	28	
감옥으로 보내는 편지	31	가족의 평화
감옥에서 온 편지	32	정연이에게
공정회 날계본	33	국가보안법 폐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람들	45	죽음을 당한 사람들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2000년을 대화년으로 선포하고 대화년의 정신과 의미를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화년은 회개와 쇠신을 통해 사회의 정의와 자유, 그리고 평화와 일치를 위해 투신하는 구원과 은총의 해입니다. 2000년 대화년이 진정한 해방과 구원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앙금과 상처를 말끔히 치유하고 불신과 억압의 장벽을 허무는 신앙인 각자의 노력이 요청됩니다.

한국사회의 지난 반세기는 분단의 질곡과 그로 인한 억압과 상처로 점철된 시기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그 중앙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고, 20세기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대화년의 정신을 실현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사회정의와 자유, 평화와 일치의 실현을 거부하고 억압해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운동이야말로 해방과 구원의 축제인 대화년의 참 정신을 이 땅에 뿌리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남과 북의 정상이 서로 만나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 마당에 국가보안법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죽은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는 89년 "국가보안법 철폐 공동대책위"를 결성하여 활동한바 있고 10년이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를 결성하여 예언자적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이 소책자가 일부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소폭개정, 또는 존속 주장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쉽고,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국가보안법 사문화 범종교인 선언

-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법일 수 없다 -

종파의 벽을 넘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며 상생(相生)의 세상을 위해 기도해 온 우리 종교인들은 냉전시대의 유산이며 반통일적 반인권적 악법의 대명사인 국가보안법의 사문화를 선언한다.

이제 국가보안법은 죽었다. 낡은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이제 더 이상 법이 아니라 악일 뿐이다. 이제 그 누구도 국가보안법으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막을 수 없다. 이제 그 어떤 세력도 국가보안법으로 인권을 억압하며 양심을 억누를 수 없다.

지난 6월 13일 남북정상의 만남과 6.15남북공동선언은 낡은 시대의 대결과 반목을 역사의 뒤안길로 돌리고 화해와 평화의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남북은 더 이상 서로에게 적일 수 없다. 갈라진 형제요 하나되어야 할 한겨레이다. 누가 아직도 북을 적이라 하는가? 누가 아직도 인간의 양심을 억압하는 국가안보를 말하는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구호가 아닌 실천의 과제가 되고 있는 지금은 서둘러 서로를 갈라놓고 막아했던 장벽들을 허물어내야 할 때이다. 북의 겨레를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어떤 법적 정치적 역사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한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은 죽었고 사문화 되었다.

입법부인 국회는 마땅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법적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의 검찰은 더 이상 국가보안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재판 중인 국가보안법 사건은 신속히 종결처리 해야 한다. 만일 여전히 국가보안법을 고집함으로써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양심을 억압하고 겨레의 통일과 평화를 저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역사의 무대에서 몰려나게 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이가 하나가 되기를 진실로 갈망하는 우리 종교인들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세계가 도래하도록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할 것이며, 국가보안법의 사문화를 선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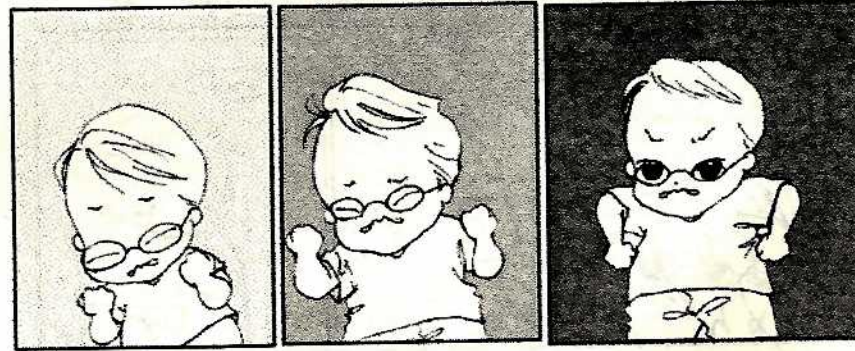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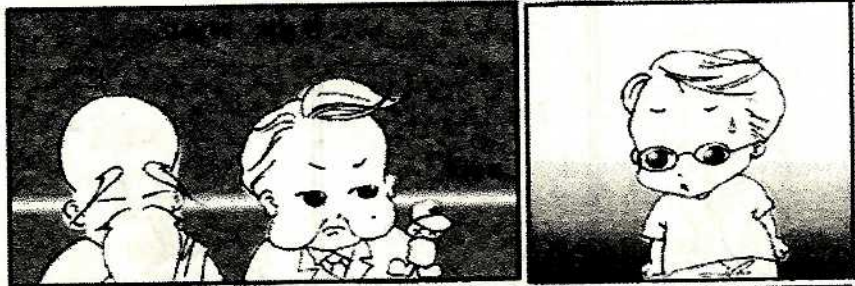
이 민족에게 은총을 받며 2000년 7월 4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 한국가톨릭교회협의회 /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 민중선교연합

문

국가보안법!! 통일!! 그리고 신앙인
by 박 여원 (어네스)







1. 국가보안법 제1조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보안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다.

3. 국가보안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다.

4. 국가보안법 제4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다.

5. 국가보안법 제5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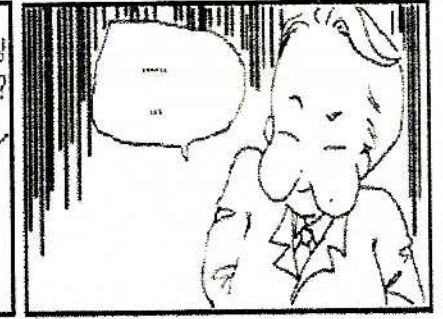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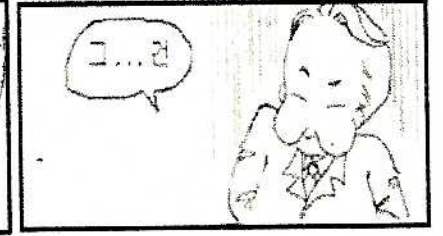
6. 국가보안법 제6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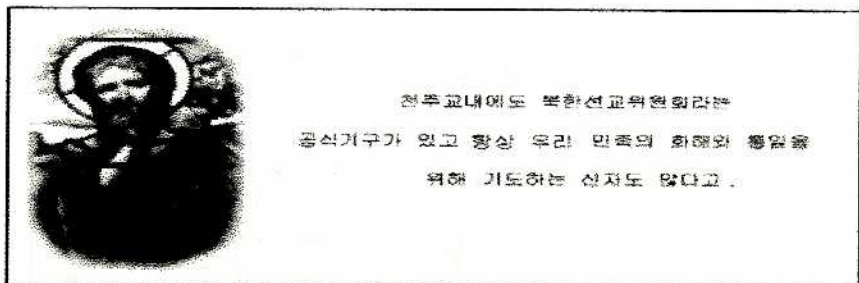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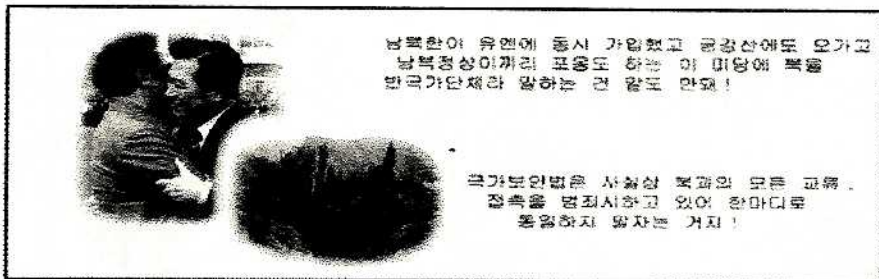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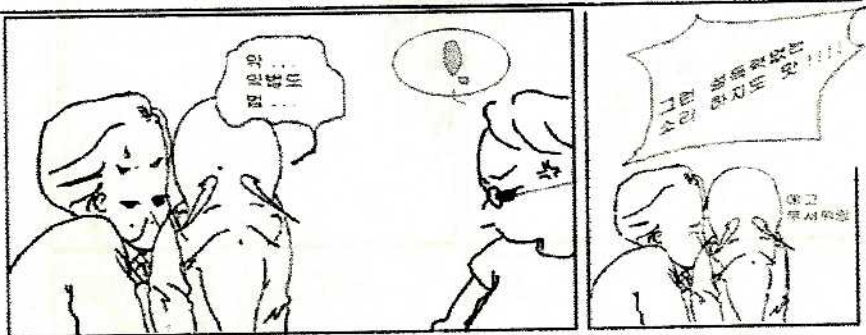
7. 국가보안법 제7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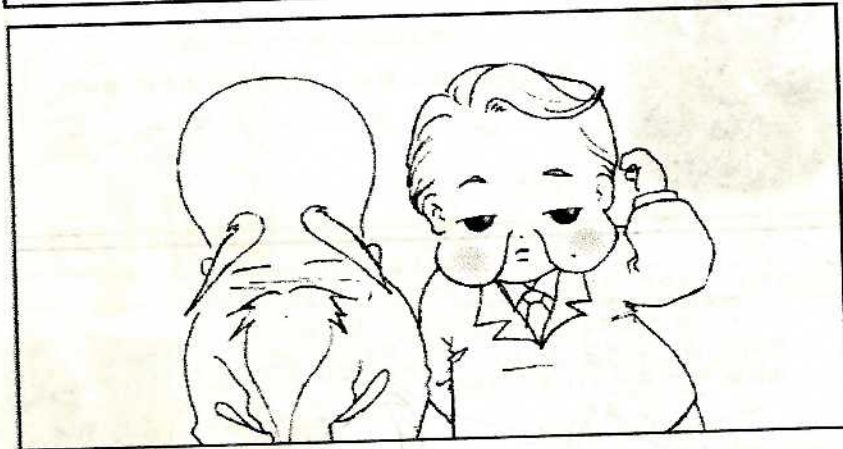
8. 국가보안법 제8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다.

9. 국가보안법 제9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다.

10. 국가보안법 제10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외 지름길입니다

국보법이야기①
언제나 가까이



국보법이야기 ②

대통령과 나

박 시백

현재의 치안유지법 유전자를 복제하여 나를 만들고 키워주신 초대 대통령 가가.

무적의 힘을 안겨주신 박 대통령 가가. 전 대통령 가가.

위험에 처한 나를 온몸을 던져 지켜주신 노대통령 가가.

지가번다

손을 봐줘야 쓰겠어

그리고 평소의 소신까지 버려가며 나를 아껴주신 김 대통령 가가.

녀석, 인제 보니 귀엽게 생겼구나

그 크신 은혜들 앞에서 어찌 충성을 다하지 않으리. 그분들에게 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박살낸다.

이렇게 대통령과 나는, 영원히 변치않을 사랑과 충성의 관계인을 알았는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구만

아! 놀래잖아

오마이갓. 뭐 이런 대통령이 다 있나? (죽었다)

손 좀 본다 그랬지?

오잉!! 아!... 이런 야당도 있구낭 (살았다!)

누구 맘대로 우리 어쩔 국뽕들

국보법이야기 ③

기준

박 시백

3박4일 동안 반국가 단체의 전유지역을 방문.

수차례 그쪽 고위간부들과 접촉하여 술마시고 노래하고 해상했는가 하면

평양이 깨끗하다고 찬양하고 개다가. 어떡구리!

적의 수고를 각dot이 장군님이라고 부르기까지 했구만. 당신은 말야

저 그 그건 어디가거나 비자사승서

잠입 탈출에다 회합통신, 금품수수, 고무찬양, 기타등등 국보법상의 조항

서서서 선생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구만

죄를 범하 승선서 정범

아이 놀래잖아

나는 경말이지 아무 한일이 없소

암마. 니네 학과는 한총련에서 탈퇴를 안했잖아. 그걸 알면서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된게 작은 일인줄 알아요? 이 국보가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 일이야!

뭐? 적물기름이 뭐냐고? 그냥 내 맘대로지 뭐





1



2



⑥

여성

임현주 시라(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 공동체 사무국 차장)

여성의 입장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달라는 원고 청탁을 받고, 약해 여성은 어느 곳이나 초대하는 것이었더니 하였지만, 세상이 좋아지기는 좋아진 것 같다. 여성학이 연구되고 여성운동으로 옮겨온 것도 채 20-30년의 세월이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도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이제는 갖가지 사회문제에 대해서 여성의 입장은 어떠한지 물어오는 것이다.

1999년 9월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가치를 들고, 사제단 신부님들께서 목숨을 건 단식기도를 하였고, 평신도들과 사회 각계 각층이 함께 했던 20세기 마지막 가을이었다.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 공동체(이하 천여공) 회원들도 비오는 천막에서 철야 농성을 하고, 신부님들과 함께 5일간의 연대 단식기도를 하였다. 그렇게 하나 둘씩 힘을 합하고 마음을 모아 반세기를 억눌렀던 국가보안법이 없어진다면, 못 할 일이 없을 것만 같았다.

여성운동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권익만을 주장하는 운동이 아니다. 여남과 자연이 서로를 억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사회 대안적인 운동이지, 여성만의 무엇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특별히 권력자들이 약자를 억압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몰아 때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서서 하는 것이다. 그래야 힘없는 사람들이 주인으로 나서려는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여성의 이야기도 함께 더불어 짝을 짤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 할 일도 많고, 다양한 운동들이 있다. 여성운동만 해도 그렇다. 성폭력 문제, 호주제 문제, 여성들의 빈곤화 문제, 종교 여성들의 문제 등등... 그런데 나는 가끔 그 많은 운동 중에 왜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하는지 자신에게 묻곤 한다. 내 나름대로의 대답은 이렇다. 나쁜 권력이 가장 발악하는 곳,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물리력을 총동원하는 그 곳에 바로 사회악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가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국가보안법만 폐지되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사회에 권위주의와 가부장제, 군사문화를 부추겨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게 우리를 엮매고, 하느님 모습을 닮은 인간을 권력 유지를 위해 마음대로 죽이고, 고문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그런 악은 없어져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없는 그런 세상, 나쁜 법을 이용해서 남을 억압하지 않는 세상을 여성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싸워갈 때, 세상의 가장 약자인 여성도 세상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

노동자

조대원 (부천노동사목)

국가보안법을 보면서 참 질기기도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반백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것도 모자라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끈질김. 통일과 해방의 거대한 흐름속에 이제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도 없고, 반인권성·반통일성이 온세상에 드러났지만 여저히 그 숨을 헐떡거리며 민중을 노리고 있는 파렴치함이 느껴진다.

국가보안법하면 노동자들에게 쉽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현장의 바쁜 일상속에 통일이나, 국보법 철폐 같은 투쟁들은, 눈앞에 있는 임·단협투쟁에 밀려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은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만히 노동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보안법은 노동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폐지시켜야 하는 악법인 것이 분명히 들어난다.

- ① 해방후 이승만 정권은 50만명의 조합원으로 조직된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전평]를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규정하여 탄압하여 전평을 궤멸시켰다.
- ② 박정희 시절에는 노동운동가들을 빨갱이, 공산주의로 몰아붙이며 공장에서 24시간도 모이지 못하게 하였다.
- ③ 전두환·노태우정권에서는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위하여 만들어진 노동단체들을 이적단체로 매도하며 탄압하고, 노조간부들을 구속하는 사례도 많이 늘었다.
- ④ 군사정권을 종식시킨 문민정부에서도 96년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을 '국가 전복세력' 운운하며 언론공작과 탄압을 한 것도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다.
- ⑤ 50년 만에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정부에서도 영남위사건등을 조작·발표하여 민주노총을 산지역본부 간부들을 연행·구속하며, 마치 현대자동차의 정당한 투쟁이 반국가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며 투쟁을 방해하였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파업투쟁들이 국가전복이나, 이적행위로 조작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조작을 위하여 사용되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문민의 정부부터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이 3000명이 넘어 서는 것을 보아도 국가보안법의 끈질김이 느껴진다.

지난 여름 명동성당에서는 신부님들의 목숨을 건 식발 단식투쟁 중 죽음을 눈앞에 두고, 외치던 목소리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하라".....
아직도 국가보안법은 우리 주변에서 또 다른 희생물을 찾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없고, 빈듯이 우리 손으로 없앨 것이다. 국가보안법 최후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의 맨 선두에는 우리 자랑스러운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다는 것을.....

||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

경지인

만약 김구선생이 좀더 생존하셨다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었을것¹⁾

김원웅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가보안법은 냉전시대의 대표적 유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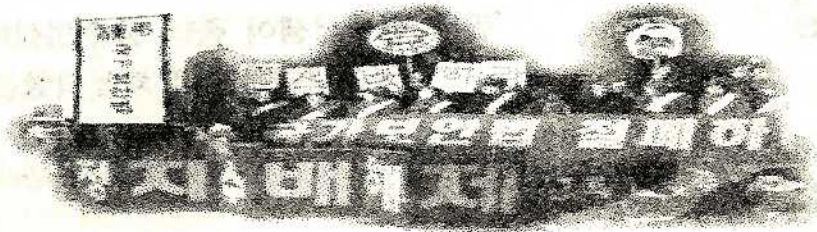
첫째, 이 법은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대화와 협상의 당사자도, 통일논의의 한 주체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북한은 섬멸의 대상이고 통일은 오직 북진통일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 회창 총재가 지난 6.19기자회견을 통해 '필요하다면 김정일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만약 이총재가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면 이는 바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지령에 의한 탈출이 되는 것입니다. 문익환 목사, 임수경씨가 바로 이런 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우리 헌법 4조(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한다)와 헌법 66조 3항(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입니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필연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무, 찬양, 선전, 동조 등 정형화하기 어려운 개념도 많습니다. '6.25는 미국과 소련때문에 일어났다.'라는 말을 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법의 가면을 쓴 폭력입니다. 국보법은 양심·사상의 자유를 침해해 왔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1) 이 글은 7월 6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의 토론문입니다.



셋째,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인권후진국이란 평가를 받아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UN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에서 한국정부에 대하여 계속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사태에 대한 우려와 권고를 하였고, 이 법이 국제인권기준을 현저하게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입장에 있어왔던 독일에는 분단지역간의 교류를 범죄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이 없고, 대만도 지난 91년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성격의 법인 비상계엄법을 폐지하였습니다.

넷째,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등만으로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애초 친일파들이 앞장서서 만든 법입니다.

1948. 9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반민특위법)이 통과되기에는 많은 곡절이 있었습니다. 친일파들이 반대한 것입니다. 친일파들이 반공만 외치면 애국자로 둔갑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 반민특위법 제정에 적극 반대하던 친일파들이 앞장서서 1948. 12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던 치안유지법, 사상범예방을 모델로 만든 법입니다.

친일파들이 이승만 정권과 결탁하여 민족주의 세력을 탄압하는데 이 법을 활용하였고, 반민특위법 제정에 앞장섰던 소장파 국회의원을 소위 프락치사건으로 제거한 것도 바로 이 국가보안법입니다. 만약 김구선생께서 좀더 살아계셨더라면 이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되었을 것입니다.

변호사

이국성 바오로 (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거론되었으며, 이제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급변하고있는 남북관계에서, 민족의 평화통일이라는 대명제 아래에서 온 국민이 가슴을 열고 논의를 하고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 남과 북의 50여년에 걸친 냉전시대의 상징으로서 국가보안법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어야하는 점에 대하여는 각자의 처한 입장마다 다른 주장들이 나오고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다.

나는 80년에 법과대학에 들어가 지금까지 20년의 기간동안 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법이 고마울 때가 침해하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여 주던 때였다. 법이라는 것의 정당성도 결국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나아가 국가와 국가간의 규범을 확립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닐까 한다.

국가안보라는 것은 전시이든 평화시이든, 통일을 하든, 분단이든 간에 4천만의 생존과 직결된 것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가 스스로 나서야 할 문제임은 틀림없다. 그러기에 병역의 의무가 용인되는 것이고 그 많은 세금도 지출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안보의 필요성과 정당성의 문제와 실제 어떠한 행위들이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것이고 이를 어떻게 규율하느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결국 국민이 선택하여 결정한 문제라고 본다.

그렇다면, 남과 북의 정상들이 평양에서 만나고 곧 서울에서도 만나게 된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 국가안보와 남북평화통일이라는 위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북한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후 이적단체에 이로움이 되는 내용들은 무엇이든지 국가기밀이고 이적단체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위반이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네티즌

심주이 (ID : 72@catholic.or.kr)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을 외치는 많은 이들을 보았습니다.

'국가보안법'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우 낮은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많은 고생을 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목놓아 외치는 것일까?

그저 그 법으로 인해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인권을 무시당하고,

통일의 날을 가로 막는다는

이 정도 밖에 알지 못하는 저이지만

웬지 저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함께 외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리 (ID : ottajulia@catholic.or.kr)

전 가톨릭 신자로서 당연히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느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억압하는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빨갱이를 잡는 법이니 꼭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전 아직 20대로서 전쟁의 '스'자도 겪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만,

북한엔 빨갱이만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북한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귀중한 존재라고 교리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생김새가 다르다고, 이념이 다르다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 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전 배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며, 그리스도인들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존귀하며 결국 하느님의 사랑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법의 논리로나,

하느님의 논리로나 국가보안법은 없어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께, 그리고 이 법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최근사례

민혁당 조직 혐의 하영옥씨 징역 8년 선고

(2000/06/16 출처 : 한겨레신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세집 부장판사)는 16일 민족민주혁명당을 조직하고 남파공작원을 만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된 하영옥(37)씨의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처를 적용해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선고했다.

하씨는 지난 92년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함흥에서 민족당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었다.



98년 통일축전 참가, 문규현 신부 징역 2년 선고

(2000/05/26 출처 : 한겨레신문)

서울지법 형사3부의22부(재판장 최병덕, 崔炳德 부장판사)는 26일 북한방문 기간중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문규현 신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처 등을 적용,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북한의 체제선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것은 잘못이며 더구나 방북 승인조건에 대해 각서까지 쓰고 서도 방북 조건을 어긴 것은 명백한 국보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문신부는 98년 8월11일 평양 장충성당 축성 10돐 기념미사 집전을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고 북한을 방문했으나 군수산기년공전에 참배하고 8.15통일대축전에 참가하는 등 애초 방북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한국사회의 이해' 보안법위반 교수에 징역 2년 구형

2000/06/27 01:30 출처 : 동아일보

경상대 교양과목 교재인 '한국 사회의 이해'를 집필한 장상환(張尙煥·50·경제학자), 정진상(鄭眞相·44·사학학자)교수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구형됐다. 창원지법 김호철(金浩徹)판사는 26일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재철·李在哲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장교수 등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김판사는 논고에서 "정부의 대북 교류와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별개의 문제며 학문의 자유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면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며 "'한국 사회의 이해'는 이적 표현물이 학식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측 문재인(文在寅)변호사는 "이 책은 자유민주 질서를 부정하거나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고 있지 않다"면서 "교수의 학문적 판단은 학문 내 시장 질서에 맡겨져야 한다며 검찰의 기소는 사회과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최근의 국가보안법 관련 연행자

- 5.24 효성카톨릭대학교 인문대학생회장(김은정)
- 5.25 전남대 부총학생회장(임영진)
- 5.29 경북대 부총학생회장(최일영), 법대 학생회장(여태희)
- 6. 2 서일대학교 황선동(건축학과) - 국가보안법 철폐 농성단 혐의
- 6. 3 중앙대 자연대 학생회장
- 6. 3 조선대 법과대학 학생회장(양우근)
- 6. 3 경기대 이과대 학생회장(김정진)
- 6. 3 항공대 부총학생회장
- 6. 4 성신여대 생활대 학생회장
- 6. 4 동국대 단과대학 학생회장
- 6. 4 조선대 법대, 사범대, 치대 학생회장
- 6. 5 대구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 6. 5 한남대 사회대 학생회장
- 6. 5 서원대 사범대 학생회장
- 6. 6 경기대 법정대 학생회장(임주표)
- 6. 9 안동대 총여학생회장(박중순)
- 6.10 연세대 원주 총학생회장
- 6.11 한양대 송현석 - 97년 한총련 출범식 관련 혐의
- 6.12 중앙대 경영대 학생회장(박종민)
- 6.15 광운대 자연대 학생회장(채수정)
- 6.17 서울대 농대 학생회장
- 6.22 12기 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최경남(광운대)
- 6.23 경기대 공대학생회장
- 6.24 경상대 총여학생회장
- 6.25 서강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지혜)
- 6.26 창원대 동아리연합회 회장, 총여학생회장, 야간대학생회장
- 6.27 5기 한총련 강총련 의장
- 6.27 경상대 법대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 학생회장
- 6.27 조선대 공과대학 학생회장(장정민)

※ 서일대학교 황선동과 한양대 송현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총련 대의원 불탈퇴 혐의로 구속영장도 없이 강제·폭력 연행되었다.

가족의 평화

서울 정목 초등학교
4학년 9반 하 정 연

“하정연양(하영옥씨)씨 장녀) 글짓기 입상작
아래의 글은 하영옥씨의 딸 정연양이 학교에서 실시한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글짓기 대회에서 수상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 다투어 따로 살고 있는 불행한 민족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화를 되 찾으려 하지 않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버리려 합니다. 우리 것을 소중히 하지 않아 IMF도 온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민족들은 우리와 반대로 외국품을 수입하지 않고 자기 것을 소중히 한다고 합니다. 북한보다 우리가 더 잘 사는 이유는 단지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자주적인 생활과 우리나라의 지식이 합치면 그 어떤 나라보다 훌륭해질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북한의 형편만 보고 50년 넘게 합치지 않았습니니다. 이제 와서 '남북 정상 회담'을 한다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때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6.25 전쟁으로 헤어진 이산가족들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싸운다는 건 쉬운 일이지만 화해해서 원래대로 만든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한 가족의 평화를 되찾는 건 어려운 일인 것 만큼 그 후 즐거운 나날만 보낼 것입니다. 옛말에도 '흠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두 나라도 합치면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탄생하리라 믿습니다. 우리와 생긴 것과 말투가 같지 않다고 사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좀 맞지 않고 어색할 뿐입니다. 북한 민족들이 훨씬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는 사귀기 나름이니까요.

김정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만나 좋은 결과 있기를 빕니다.



2) 2000년 6월 16일, 민족민주혁명당 조작사건으로 징역 8년 구형

정연이에게

하영옥씨가 딸 정연이에게 보낸 편지

정연아, 그 동안 잘 자랐는지 궁금하구나. 엄마 통해서 정연이 소식 듣고는 있지만 그래도 궁금하긴 마찬가지다. 아빠는 잘 지내고 있다. 이제 정연이도 4학년이 되었구나. 이제는 삼학년때 속하는 언니가 되었으니 좀더 의젓해져야겠다. 정연이가 학교에서 화장이 되었다는 소식 들었다. 축하한다 정연아. 아빠도 기쁘구나.

정연이가 화장이 되었다니 아빠가 몇 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가슴에 잘 새겨서 잊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첫째로는 화장은 학교 친구들이 뽑아준 것임을 잊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학교 친구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장이 되었다고 자기 혼자 잘난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한다든지, 학교 친구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제멋대로 한다든지 하다가는 대번에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라. 둘째로는 친구들을 공평하게 대하라는 것이다. 공부 못한다고 무시하고 얼굴이 안 예쁘다거나 뚱뚱하다고 놀리고 힘이 약하다고 얕잡아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정연이는 그러지 않으리라 믿는다. 다만 정연이가 그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정연이는 거기에 동조해선 안된다. 화장은 모든 친구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편에 서야 한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친구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로 공평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연아, 아빠가 당부하는 말은 겸손과 공평 두 가지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두 가지는 꼭 명심해서 친구들로부터 칭찬받는 좋은 화장이 되기 바란다. 선생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들이 인정해주고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특히 화장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정연이가 밝고 힘차게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빠는 무척 기분이 좋았다. 지금처럼 정연이가 밝고 힘차게 지내며 힘들어도 씩씩하게 이겨 나가면 틀림없이 정연이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아빠는 정연이를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란다.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동생도 잘 돌봐주는 의젓한 정연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빠는 더욱 힘이 나곤 한다. 앞으로도 더욱 밝고 힘차게 의젓하게 생활하길 바란다. 그리고 비록 처음 맡아 본 회장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아빠가 이미 말해 준 겸손과 공평, 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아예 맞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잘 풀릴테니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하길 바란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평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라'
이 말을 명심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며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쳐한다. 잘 있거라. 사랑하는 내 딸 정연아



2000년 3월 12일 일요일 밤에
아빠가 썼음

"국가보안법의 폐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³⁾

김인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I. 머리말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지금까지의 비판의 대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든지,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좌협법정주의에 어긋난다든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든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에 위배되고 통일의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든지 하는 등의 비판이 있어왔다. 사실상 지난 50년간의 모든 비판과 논의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많은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과 싸우는 과정에서 위 비판과 논의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장구한 세월의 비판 속에서도 국가보안법은 의연히 계속 개악의 길을 걸어오면서 존속해 왔다. 그 이유는 냉전체제의 존속과 정권적 차원의 이용에 있었다. 즉 국가보안법은 전적으로 냉전체제에 기생하고 있는 법률이므로 냉전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이상 그 폐지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냉전체제에 기반하고 있는 세력은 우리 사회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들의 힘이 약화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의 개폐논의는 항상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은 지난 시기 독재정권 혹은 권위주의 정권의 입장에서 반대세력을 진압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법률로 작용하여 왔다. 냉전체제가 엄존하고 있는 이상, 그리고 세계적 냉전체제에 한반도 차원의 분단체제가 엄존하고 있는 이상, 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정권안보 수단이었음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국가보안법은 국내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인 비판과 압력 속에서도 의연히 존속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시대는 한반도를 비껴나가지 않고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갖출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시대는 진정 민주화된 통일 조국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된 통일조국은 우리 모두가 헌법에서 약속한 한반도의 미래의 모습이고 이 길만이 우리 민족의 살길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요청이 극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지난 6월의 남북정상회담이었다.

민주화된 통일조국은 우선 냉전체제와 분단체제의 완전한 청산을 요청한다. 북한을 투쟁과 극복의 대상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북한과 손을 잡고 통일을 해야 할 지상명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화된 통일조국은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개인의 인권에 대한 완전한 보장을 요청한다. 사실상 민주주의란 국민 개개인의 인권의 보장없이는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인권의 보장은 민주주의의 다른 표현양식에 지나지 않는다.

3) 이 글은 7월 6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의 발제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의 변화속에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개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당연한 현상이다. 국가보안법은 우리가 청산해야 할 구시대의 잔재에 기생하고 있는 법률이고 미래를 지향해야 할 시기에 과거를 지향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위와 같은 시각에서 다시 제기하고자 한다. 실제로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이미 거론될 대로 거론되었으므로 달리 이를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우리의 민족사적 과제가 민주화된 통일조국이라는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을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본다.

II.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

1. 우리 헌법의 입장

국가보안법의 거론할 때 우선 헌법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우리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위배하는지 아닌지를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정신이 얼마나 헌법의 정신을 왜곡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1) 헌법의 규정

우리 헌법은 조국의 통일과 관련하여 많은 조항을 할애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의 어떤 헌법에서도 볼 수 없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헌법의 통일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전문)을 대한국민의 사명으로 규정하고 그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전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후,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며(제4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고(제66조), 대통령의 취임선서 중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제69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제72조)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은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2조 제1항).

(2) 우리 민족의 컨센서스 - 통합의 구심점

위와 같은 헌법의 관련 규정으로부터 우리는 최소한 우리 국민의 통합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그 어느 이념이나 기본권에 못지 않게 중요한 통합의 구심점이고 국민의 컨센서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굳이 헌법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민족적 사명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대통령의 의무,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구성, 국민들의 투표권 등을 규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평화적 통일이 민족적 사명이라는 것은 평화적 통일을 이루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의 행복과 안녕이 영원히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평화적 통일이란 결국 우리 민족의 통합의 구심점이고 국민의 컨센서스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정부에 평화적 통일 달성을 위한 우선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국민에게 부여한 사실로부터 전국민의 통합, 우리 민족의 행복과 안녕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가치에 달려있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헌법은 현재 분단된 상황을 과감히 인정하고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또 통일을 이루어 냈을 때만이 국민의 통합이 온전하게 달성될 수 있다는 점과 우리 민족의 행복과 안녕이 보장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공청회 발제문』

(3) 통일기본권의 부여

한편 우리 민족의 통합의 구심점, 국민의 컨센서스란 결론에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없이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현대의 헌법이론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결국 헌법적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통일에 관한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이로써 통일기본권이라는 헌법상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통일기본권이란 헌법상 국민들에게 주어진 통일에 관한 기본권으로서 조국의 분단이 국민의 행복추구를 방해하고 민족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에 조응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자신의 처지에 맞게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일과정에 참여하여 그 과정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인 것이다.

(4)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그러나 이러한 통일기본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통일기본권의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의 성격 때문에 구체적인 입법 조치가 따라야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기본권이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에서 국민들에게 통일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통일기본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상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에서 거의 담보되기 때문에 우리 남한의 법률이 통일기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반국가단체 규정의 위헌성

(1) 국가보안법상 핵심적인 개념인 반국가단체

국가보안법의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반국가단체이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하는 행위, 반국가단체 지배하의 지역으로 잠입, 탈출하는 행위,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반국가단체이다.

그리고 반국가단체가 바로 북한을 의미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가보안법의 제정경위가 그러하고 또 적용의 실체가 이를 증명한다. 국가보안법이 북한이 아닌 일반적인 반국가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은 현실을 부정하는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정신문화원의 양동만 교수도 “국가보안법은 북한으로부터 위협에 대항하여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북한을 반국가단체 범위에서 빼버리면 국가보안법이 필요없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킬려면 북한은 반국가단체에다가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정운영의 100분 토론회 발언내용).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은 바로 반국가단체, 북한에 대한 입장에서부터 비롯된다.

(2) 북한이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점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규범적으로 북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통일을 달성해야 할 과정에서 대화와 협력을 해야 하는 동반자임이 틀림없다. 우리 남한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통일의 방식을 평화통일이라고 못박고 있다. 평화통일을 우리 헌법에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침략적 전쟁을 금지하고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평화적 국제질서가 한반도 차원에서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의 평화통일 조항은 단순히 위와 같이 일반적인 평화주의 원칙을

『공청회 발제문』

천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평화적 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남북간의 대화와 협조, 교류와 협력 등이 주요하고도 유일한 수단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에게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협조, 교류와 협력을 해야 할 동반자임을 헌법은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위 헌법의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북한의 존재는 북한의 본질이다. 그러나 그 본질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현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지난 시기 국가보안법의 존재론자들의 주장은 북한이 남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었다. 물론 위와 같은 주장은 주장 자체로서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현상일 뿐이다. 북한의 본질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것이다. 이러한 본질과 현상을 구분하지 못할 때에는 지극히 반복적인 이데올로기에 휩싸이게 되며 결론적으로 북한을 전적으로 무시하게 되어 반통일적인 입장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3) 북한 정권의 이중적 성격론

한편 북한 정권의 성격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북한정권의 이중적 성격론을 개진한 바 있다. 그 내용은 “헌 단계에 있어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이다(헌재결 1997. 1. 16. [92헌바6, 26, 93헌바34, 35, 36]).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규범조화적 해석으로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상충하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 관계를 규명하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안전성을 보인다. 물론 위와 같은 해석이 시도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국가보안법의 지위가 약화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보안법이 헌법재판소가 주장하는 북한정권의 이중적 성격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듯이 위 이론은 결국에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용될 뿐인 사후합리화적인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이론은 북한정권의 이중적 지위 관계를 더욱 세밀히 규명하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북한의 실체를 부정하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의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이론은 자신의 이론을 궁극에까지 발전시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존재를 본질적인 부분과 부차적인 부분으로 구분한다면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즉, 헌법의 규정으로부터 북한의 본질적인 성격이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은 분명하므로 북한의 존재가 본질적으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면서 부차적으로 북한이 남한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북한은 그 존재 자체로서 남한에 위협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남한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만 남한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 즉 소위 반국가단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 북한이 존재 자체로서 위협을 가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남한의 주권을 옹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북한은 다른 일반 외국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항상적인 의미를 갖는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을 더 이상 북한에게 붙일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앞에서 살펴보든 바와 같이 헌법의 전 조항에 의할 때, 또 헌법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민족적 사명임을 규정하고 우리 민족의 통합의 구심점 중의 하나가 조국통일임을 규정하는데서 나오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조국의 통일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을 반영하는 결론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

|| 공청회 발제문 ||

실상 헌법재판소가 헌법상의 통일기본권 이론에 입각해 있고 자신의 북한정권의 이중적 성격론을 보다 더 발전시켰더라면 충분히 도달할, 그리고 또 마땅히 도달했어야 할 이론이라고 할 것이다.

(4)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전적으로 반국가단체로 보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때이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우리 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민족적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통일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국민 모두는 북한 구성원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또한 바로 이러한 만남의 과정에서 통일은 이룩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본질이다. 그리고 북한이 주어진 시기와 조건에 따라 남한의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이것은 현상이다)에는 우리 헌법에 따라 이를 처리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너무나 명백하게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본질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자신의 생명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위 반국가단체 규정은 헌법의 평화통일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의 통일기본권 역시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통일을 위한 기본 조치로서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해야 하는 요청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고 그 결과 우리 민족의 민족적 사명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요청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위헌이고 그 폐지를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행위행방이 아닌 국가보안법

또 하나 첨언해야 할 점은 이미 위에서도 간략히 언급된 바 있지만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존재자체를 처벌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대형법의 기본원칙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근대형법이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범죄이고 범죄란 곧 사회적 유해성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범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로서 위험성을 판단하지는 않으며 반사회적인 어떤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형법은 이를 처벌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어떤 행위를 하였든간에 그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명백히 근대형법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형법 본래의 요청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III. 국가보안법의 반민주성, 반인권성

1. 우리 민족의 사명인 민주개혁

우리 헌법은 우리 민족의 사명으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함께 민주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민주개혁을 우리 민족의 사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우리의 역사가 그 만큼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주는 징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민주주의의 완성이 우리 민족에게 또 하나의 지상명령임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개혁, 즉 민주주의의 완성은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민주개혁은 인권이 법적, 제도적, 구조적으로 얼마나 잘 보장되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국가보안법은 기초적인 인권의 보장을 제도적으로 가로막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 공청회 발제문 ||

2.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

(1) 국제연합 세계인권규약의 내용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은 우선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우리 나라는 이미 세계인권 B규약(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다. 위 규약은 제18조 제1항에서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19조 제2항은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위와 같은 명시적인 사상의 자유 및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어 위 인권규약과 거의 유사하게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위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기본권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의 하나로 해석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위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국제연합의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1998년 국가보안법이 유엔의 인권규약(B규약 제19조)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 정부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라고 두차례나 결정된 사실만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 중 핵심적인 부분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다소 장황하더라도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은 박태훈씨 사건과 김근태씨 사건에서 두 차례 이루어졌다. 위 두 사건에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자유권 규약 제19조가 보장하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첫째,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둘째,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공공의 건강 또는 도덕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법률에 의해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내에서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후에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는 모든 민주적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 권리의 실현을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도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그 정당성을 심사받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위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통보자(피해자)에 의한 표현의 자유 행사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위협의 정확한 성격을 대한민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실패했고 정부가 내세운 어떠한 주장도 제19조 제3항에 따라서 통보자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제한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권 규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규약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규약이 인정하는 모든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들 권리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들을 강구하였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권 규약에 따른 의무보다 국내법의 적용을 우선하는 것은 규약과 합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권 규약 제4조 제3항에 따라서 비상사태가 존재하며 그에 따라 규약의 일부 권리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일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김근태씨 사건에서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북한의 정책이 대한민국 내에서 잘 알려져 있으나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견해를 출판함으로써 북한이 받을 수 있는 막대한 이익이 어떻게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하는지 또 그러한 위협의 성격과 정도가 무엇인지는 불명확한데 법원이 통보자의 연설이나 문서의 내용이 청중과 독자들에게 공공안전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보호를 위협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거나 고려했다는

|| 공청회 발제문 ||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결론적으로 박태훈씨와 김근태씨에 대한 유죄판결이 자유권 규약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했다.

(3)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보는 사상 및 그 표현의 자유

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은 몇가지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이를 표현하는 자유는 구분되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아닌 표현의 자유만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공공의 건강 또는 도덕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그 형식도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 그 범위 역시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이다. 셋째, 국가안보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표현이 국가안보를 어떻게 얼마나 침해했는지에 대하여, 즉 그 위험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그 위험의 정도는 미국법상 알려진 "명백하고도 현존한 위험"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4) 사상의 자유 및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은 그 법률 자체로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이를 표현하는 자유를 본질적인 점에서 침해하고 있다. 즉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묻지 않고 그 사상과 양심이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이 특별한 표현방식을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위험의 정도에 대해서는 확립된 판례로 적극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실상 한 개인의 사상과 양심은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발전할 수 있고 그 결과 북한의 주장과 동일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남북한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나, 국가보안법 철폐의 주장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생각을 하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 생각 자체가 사회에 위험성을 주는 것이 아닐진대 국가보안법은 이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주장은 우리 법원이 일관되게 "표현행위 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인식은 그 행위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거가 없다. 즉 국가보안법의 법문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인 요소로서 이적성의 인식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일관하여 그러한 초과 주관적인 요소인 이적성의 인식을 행위로서 추정해버림으로써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이를 표현하는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를 가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우리는 이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3. 반인권성은 구조적인 문제

(1) 끊이지 않는 인권시비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적인 문제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이를 표현하는 자유이외에 신체의 불가침성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1999년에만 해도 구속된 피고인의 95%가 넘는 인원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000년 3월 현재 1999년 한 해동안 구속자 286명 가운데 재판이 끝난 249명 중 244명이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되었다). 실로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으로도 충분함에도 과도하게 인신을 구속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공청회 발제문 ||

나아가 1999년 한해동안만 해도 일반 시민을 수배자로 오인하여 불법 연행, 불법 감금한 사례(박관조, 김태훈씨 사건), 학생을 붙잡기 위해 시내버스제로 경찰서로 연행한 사건(김기호씨 사건), 물증없이 11명을 연행하여 반성문 강요한 후 모두 풀어준 사건(홍기희 사건), 한총련 대의원 연행과정에서 시내버스제로 강제연행한 사건(호남대 전정훈씨 사건), 불법 수집한 정보를 내세워 '정보원' 활동하도록 희유, 협박한 사건(강성석씨 사건) 등 인권침해 사례는 소위 국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끊이지를 않는다.

(2) 국가보안법에 터잡은 구조의 문제

이렇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인권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하나의 체제, 구조가 국가보안법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에 터잡은 구조, 체제를 혁파하지 않고는 국가보안법의 신중한 적용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9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연도별 지방청별 "보안수사대 인력현황"은 1996년 568명, 1997년 759명, 1998년 841명, 1999년 826명을 보여주고 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의 통계인데 문민정부에서부터 현재의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찰청에서 국가보안법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보안수사대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검찰의 경우 1999년 3월 12일 대통령 훈령 제77호에 근거해 '공안대책협의회'를 신설했다. 위 공안대책협의회는 지난 5.6공 당시의 합동수사본부, 한총련 좌익합수부,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 등을 거쳐 국민의 정부에서는 '공안합동수사본부'로 발전한 합수부가 이제는 대통령의 훈령을 근거로 범죄화를 시도하여 그동안의 탈법, 초법적인 기구라는 시비를 원천적으로 막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을 기반으로 한 체제와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이상 국가보안법의 인권시비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국가보안법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은 자신의 존속을 위해서도 과도한 실적을 올리기에 열중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 시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은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상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제21조 제2항), 구조적으로 과도한 수사와 검거를 조장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인권의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단순히 국가보안법을 잘못 적용해서가 아니다. 국가보안법에 터잡은 구조가 끊는 인권시비를 일으키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구조를 혁파하지 않고는 인권시비를 줄일 수 없고 그 구조 혁파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있는 것이다.

(3) 사법부의 타협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을 논함에 있어서 사법부의 입장을 살펴볼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여과없이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구속자 재판결과 249명 중 244명이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되는 형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5명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한 양형을 보이고 있다. 이점은 사법부가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으나 이를 정면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양형을 낮추는 방식으로 타협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현재의 사법부는 구미 선진국에서 사법부가 사상탄압법의 적용을 자제하던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위헌판단을 함으로써 그 퇴화에 기여했던 것과는 달리 그 본질적인 문제점을 회피함으로써 스스로 법질차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여 온 것이다.

4. 죄형법정주의의 문제

국가보안법의 죄형법정주의의 문제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연구가 진행되어 있고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공감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문제이기는 하나 특히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과 적정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국가기밀, 비밀, 고부, 찬양, 동조, 잠입, 탈출, 편의 제공, 혼란을 조성할 우려 등 불확정 개념들이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개념들의 애매모호성으로 인하여 거의 무한한 유추해석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 뚜렷한 객관적 구성요건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목적으로' 등과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에 의하여 정치범죄의 성립이 좌우되도록 함으로써 행위형법의 원칙이 무너지고 심정형법에 지배받고 있다는 비판, 그리고 위와 같은 문제점은 사법부의 소극주의와 결합하여 광범위한 적용을 초래했다는 비판 등을 지적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IV. 국가보안법 존치론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

1. 소위 상호주의

(1) 상호주의의 내용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주장하는 논자들의 최근의 근거는 상호주의이다. 즉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을 철폐 또는 개정할 수는 없고 북한이 먼저 혹은 남북한이 동시에 약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북한이 개정해야 할 내용으로는 조선노동당 규약과 형법을 들고 있다.

(2) 조선노동당 규약

문제가 되는 조선노동당 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노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

그러나 조선노동당 규약과 우리의 국가보안법을 동렬에 놓고 비교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법률로서 남북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대하여 적용됨에 반하여 조선노동당규약은 법률이 아니어서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당원에게만 적용되지 일반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형법을 받게 되지만 조선노동당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당원에 한하여 책벌을 받는다. 그 책벌의 최고형은 제명이다.

셋째, 국가보안법은 강제적용되는 법률이지만 조선노동당 규약은 이를 승인한 당원에게만 적용되는 내부 자치 규범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일부 논자는 북한 헌법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제11조)는 규정에 따라 조선노동당 규약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규범과 자치규범의 차이를 전혀 보지 못하고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

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하고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이상 헌법 제18조)이라는 북한의 통치체제를 전혀 무시하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선노동당 규약과 국가보안법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근거가 없다. 허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선노동당 규약의 개정을 언급한 마당에야 이를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다.

(3) 북한의 1987년 형법

북한의 형법은 1987년 크게 개정되었다. 이후 1995년에 북한의 형법은 소폭의 수정을 거쳤으나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형법은 국가보안법과 달리 국가와 사회,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형적인 일반 형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 형법을 국가보안법과 비교하는 것이 격에 맞지는 않지만 굳이 국가보안법과 비교하자면 북한 형법의 제3장 반국가범죄의 내용이 국가보안법과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형법의 반국가범죄의 내용은 모두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우리 형법이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교에 관한 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 27개 조항에 비하여 상당히 소략하다(내란,외환죄만 따지면 총 17개 조항). 그 내용도 공화국 전복 또는 폭동(제44조), 간부 및 인민에 대한 테러(제45조), 반국가범죄 선전선동(제46조), 적의 편으로 도망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조국반역행위(제47조), 외국인의 간첩행위(제48조), 외국인의 무장간섭행위 등(제49조), 파괴침해행위(제50조),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제51조),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행위(제52조, 제53조), 반국가범죄에 대한 은닉(제54조), 반국가범죄에 대한 불신고(제55조) 등이다.

위 조항들은 대부분 우리 형법상의 국가를 보호법적으로 하는 범죄 유형과 상당수 일치한다. 다만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규정은 우리 형법에 규정이 없는 것이나 이는 국가보안법과 무관하므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보안법과 형식상 유사한 조항은 제55조의 반국가범죄에 대한 불신고죄 정도라고 보여진다. 반국가범죄 선전선동 역시 국가보안법과 유사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 형법에서도 내란 및 외환죄 등에서 선전 선동을 처벌하고 있다는 점,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선전, 선동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고부 찬양, 선전, 동조하는 행위까지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북한 형법과 국가보안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첫째, 북한 형법은 일반법으로서 불신고죄와 같은 약간의 문제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우리 형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를 보호하고자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국민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특별법으로서 구체적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북한 형법은 남한을 반국가단체로 정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북한 형법은 어디에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였다, 혹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했다고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북한 형법은 특히 폭동행위, 테러행위, 반국가범죄행위를 선전, 선동하는 행위 등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 우리 형법과 같이 행위형법으로서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자체를 처벌하고 그 구성원과 회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 여기에서 그 목적, 혹은 이적성은 중요하지 않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목적, 혹은 이적성은 행위로부터 다시 추단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에 대해 북한 형법이 유추해석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제10조)을 들어 반국가범죄의 내용이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할 논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조항에서 북한 형법은 "그러나 범죄의 종류와 위협성으로 보아 그와 유사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을 수 없으며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침해대상과 사회관계, 주관적 표징과 범인의 표징의 한계를 넘어 유추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그 한계를 밝히고 있는 바 일부 논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위와 같은 유추해석의 한계가 북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다 실증적으로 논증해야 하고 유추해석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를 우선 밝혀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형법과 국가보안법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논리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애초에 일반법인 북한 형법을 국가보안법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4) 정치적 선택으로서의 상호주의

위에서는 상호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북한 조선노동당규약과 형법을 분석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의 상호주의가 근거가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의 상호주의는 단순히 실증적인 근거가 없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본질적으로 상호주의란 상대가 변화함에 따라 자신도 변화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우 보수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발전해나가는 남북한 관계를 선도할 수 있는 정치 원리로 채택하기 어렵다.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선택으로서의 상호주의는 남북한 관계에서는 과거지향적인 원칙, 수준낮은 원칙이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대북한 상호주의의 뿌리에는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논자들은 남한의 입장도 변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자연스럽게 끄집어 낸다. 이러한 입장은 서독의 빌리 브란트 수상과 신동방정책 시행 당시 야당이었던 기민당, 기사당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당시 기민당, 기사당은 신동방정책으로 동독을 전혀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정책의 변화로 오히려 서독은 서방국가들의 신뢰를 상실하여 서방동맹으로부터 서독의 고립을 자초할 것으로 판단하여 신동방정책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역사는 그와 반대의 길을 걸었음을 보여준다. 왜냐 하면 신동방정책은 미래를 보여주는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미래에 독일이 어려워야 하는지, 미래에 유럽이 어려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당시 야당의 주장은 현상유지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거지향적이었고 그 어떤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상호주의는 한민족의 미래를 제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될 것이다.

2. 안보태세 확립의 문제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이 주장하는 또 하나의 논점은 안보제일론이다. 안보제일론은 한국전쟁의 경험을 기초로 현실적으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두가지만 지적하고 싶다.

첫째, 안보란 총체적인 개념이다. 정치력, 경제력, 외교력, 국방력, 국민의 통합정도 등 그 나라의 국력을 나타내는 또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발전시킬수록 안보는 오히려 튼튼해진다. 왜냐 하면 북한으로부터의 침략 위협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그 어떤 신무기보다도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했다. 남북관계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안보는 더욱 튼튼해지기 마련이다.

둘째, 우리 형법은 안보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다. 형법의 제정당시 국가보안법이 필요없을 정도로 형법을 완벽했다는 것이 입법자들의 의견이었다. 현재의 형법도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다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안보를 담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률이라는 주장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3.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우리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헌법의 평화통일 조항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주로 유일합법정부론이나 흡수통일론 등을 지지하는 조항이라고 주장되어 왔다. 즉 지금까지 구한말영토의 승계이론이나 미수복지역논리, 또는 반국가단체지배지역이론, 유일합법정부론 등을 내세워 북한 지역을 현실적으로 우리의 영토로 간주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것을 해석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헌법 제3조가 있는 한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므로 국가보안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 왔다.

그러나, 헌법 제3조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은 모두 구이론으로서 최근에는 위 이론을 그대로 주장하고 계시는 학자들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헌법의 체계적인 해석상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우리 민족의 사명임에 비추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은 평화통일 조항에 걸맞게 해석되어야 하며 이런 점에서 영토조항은 거의 사문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토조항은 이후 적절한 시기에 개정되어야 한다. 다만 개정되기 전까지는 영토조항이 통일된 한반도의 영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침략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한 개정시까지 존속하여도 헌법의 평화통일 조항과 큰 마찰은 없을 것이다.

V. 맺음말

국가보안법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의 위헌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시기와 상황이 바뀌면서도 끊임없이 폐지, 개정 논의에 시달려 왔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은 남북한 문제를 외세의 개입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합의하였다. 참으로 정당한 결정이다. 남북한이 같은 자리에 앉아 민족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결정할 때만이 참된 통일조국이 달성될 수 있고 민주개혁이 달성될 수 있다. 북한을 더 이상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놓고서는 남북한 문제를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 통일의 길은 멀지만 통일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한은 친북해야 하고 북한은 친남해야 하는 길이다. 이곳에서의 출발점은 상대방을 솔직히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총의를 모아도 변화된 21세기를 제대로 헤쳐나가기 힘들지도 모른다. 하물며 한쪽을 배척해서야 어떻게 변화된 시대를 헤쳐나가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한반도차원에서 달성할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의 폐지에서부터 우리 민족의 미래를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손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 사람들 ||



국가보안법에 의해
목숨을 잃은 분들 중에
몇 분입니다.



발행처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110-5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50-17
전화 : 02-747-2448 전송 : 02-747-2447
통신ID : kukbobub@chollian.net
발행일 : 2000년 7월 10일
발행인 : 김영진, 이완영, 문국주

광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자전거 대행진!

2000!

뜻이
이로
한

힘차

페다
바기
런
권!

- 일시 : 2000년 7월 27일(목) 10시 30분
- 행진구간 : 명동성당 → 광화문 → 구파발 → 벽제 → 문산 → 통일공원 → 임진각
- 주최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 후원 :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
- 문의 : 천주교연대 사무국(T.02-747-2448, F.02-747-2447, 016-639-2964)

*행사당일 질서유지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전거 수량으로 인해 선착순으로 1000명만 모집합니다.